

GS칼텍스, LPG 저장탱크 소송 패소

광주고법, 인구 밀집지역으로 불허처분 정당 ... 1심에서는 승소판결

GS칼텍스가 LPG(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놓고 제주시와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6월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LPG 저장탱크 설치 불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인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 떨어진 지점에 공동주택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점, 부지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며,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제주항 인근에 LPG 저장탱크(프로판 300톤에 부탄 698톤)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하자 200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2>